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차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43

발의연월일: 2025. 1. 20.

발 의 자: 차지호 · 서미화 · 박지혜

임미애 · 남인순 · 전진숙

권향엽 · 신정훈 · 박희승

서영교・황 희・박수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,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,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내용일 뿐 직접적 구속사유가 되지 못하여 최근 이른바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닌 피고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70조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위험성,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"을 "위험성 등"으로 한다.

4.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구속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7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第70條(拘束의 事由) ① 法院은 | 第70條(拘束의 事由) ① |
|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 | |
| 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| |
|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 | |
| 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| |
| 拘束할 수 있다. |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4.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중요 |
| | 참고인 등에 대해 위해를 가 |
| | 할 우려가 있는 때 |
|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| ② |
|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 | |
| 성, 재범의 <u>위험성, 피해자 및</u> | 위험성 등 |
|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 | |
| <u>려 등</u> 을 고려하여야 한다. | |
| ③ (생 략) | ③ (현행과 같음) |